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193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 공제율 상향, 적용기한 연장 등	2
2. 혼인관련 세액공제 금액 상향 및 기간 연장(전재수의원안, 송석준의원안)	11

I. 개요

1.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19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전재수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11. 4.
- (3) 회 부 일 : 2024. 11.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두고 있고,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 제도를 두고 있으나, 신혼부부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제 혜택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상향 조정 하려는 것임(안 제95조 신설 및 제126조의2제10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 공제율 상향, 적용기한 연장 등

가. 제도 개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30%¹⁾,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30%,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함.

또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및 도서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한도를 별도로 적용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율		공제한도		
구분	공제율	구분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① 신용카드	15%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②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③ 전통시장	4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대중교통 200만원
④ 대중교통	40%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소득공제율		공제 한도			
구분	공제율	구분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⑥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 등	30%		도서 등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9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도입 당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한이 10차례 연장되어 2025년말 일몰 예정임.²⁾ 2005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로 신용카드 사용 유도차원의 조세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어 공제율을 소폭 인하하였으며,³⁾ 2007년에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의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공제문턱을 총급여액의 20% 초과로 상향하고, 공제적용률을 20%로 증가시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높여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였음.⁴⁾ 이후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 인상(2009년 개정),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1년 개정),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3년 개정), 서민 중산

2) 최초 도입 시 적용기한은 2002. 11. 30.이었으나 2005. 11. 30. ⇒ 2007. 11. 30. ⇒ 2009. 12. 31. ⇒ 2011. 12. 31. ⇒ 2014. 12. 31. ⇒ 2016. 12. 31. ⇒ 2018. 12. 31. ⇒ 2019. 12. 31. ⇒ 2022. 12. 31. ⇒ 2025. 12. 31.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왔음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종전 20%에서 15%로 하향조정함.

4) 이를 통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를 늘려야하며, 일단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음. 또한 과표양성화와 무관한 지출 또는 중복공제 성격의 지출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상에서 배제하였음.

충 세부담 경감을 위한 급여수준별 한도 조정(2016년 개정), 도서
공연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8년 개정) 등 소비심리 개선
과 건전소비 문화 정착,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
이 이루어졌음.⁵⁾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조 8,537억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3조
9,458억원에 달하였으며, 2024년에는 4조 1,183억원, 2025년에는 4
조 3,6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조세지출액	18,537	21,176	22,553	24,698	31,882	31,675	39,458	41,183	43,69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5) “2018 조세특례심층평가(I)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획재정부, 2018

나. 혼인한 연도의 신용카드 공제한도 상향(전재수의원안)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6조의2)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항목 및 공제율:	☐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공제한도 상향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항목 및 공제율: (현행과 같음)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전통시장</td><td>40%</td></tr><tr><td>- 대중교통</td><td>40%</td></tr><tr><td>-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td><td>30%</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able>	구분	공제율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30%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신용카드	15%																											
구분	공제율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30%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신용카드	15%																																						
○ 공제 한도 <table><tr><th colspan="2">총급여</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tr><th colspan="2">공제 한도</th><td>300만원</td><td>250만원</td></tr><tr><td rowspan="3">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2">300만원</td><td>200만원</td></tr><tr><td>대중교통</td><td></td></tr><tr><td>문화비</td><td></td><td>-</td></tr></table>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문화비		-	○ 공제 한도 <table><tr><th colspan="2">총급여</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tr><th colspan="2">공제 한도</th><td>300만원</td><td>250만원</td></tr><tr><th colspan="2">기본공제 한도</th><td>300만원 (혼인:500만원)</td><td>250만원 (혼인:500만원)</td></tr><tr><td rowspan="3">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2">300만원</td><td>200만원</td></tr><tr><td>대중교통</td><td></td></tr><tr><td>도서 등</td><td></td><td>-</td></tr></table>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혼인:500만원)	250만원 (혼인:50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 등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문화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혼인:500만원)	250만원 (혼인:50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 등		-																																				

* 전재수의원안 2024. 11. 4. 제출(의안번호 5193)

☐ 개정안은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현행 25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300만원)에서 총급여액과 무관하게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혼인

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결혼과 관련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일정 수준 완화하려는 것임.

- 통계청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처음으로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2023년 기준 19만 3,657건을 기록하였음.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 역시 혼인건수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6년 5.5건에서 2023년 3.8건으로 약 31% 감소하였음.

[연도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단위: 건, 천명당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혼인건수	281,635	264,455	257,622	239,159	213,502	192,507	191,690	193,657
조혼인율	5.5	5.2	5.0	4.7	4.2	3.8	3.7	3.8

주: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함.

자료: 「인구동향조사」, 통계청(국가통계포털 KOSIS)

이와 같은 혼인률의 하락은 저출생 추세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⁶⁾이 2017년 1.05명 수준에서 2023년 0.72명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 반등하였으나,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로⁷⁾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6) 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7)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OECD평균
0.81	1.66	1.53	1.58	1.80	1.30	1.58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0.97	0.91	0.84	0.81	0.78	0.72	0.75

자료: 통계청

□ 이에 개정안은 혼인한 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제도의 기본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혼인과 출산 장려를 통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혼인비용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혼인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13세 이상 미혼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남녀 모두 결혼자금의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선택하였는데, 개정안에 따른 경우 혼인비용을 경감함으로써 혼인을 장려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3세 이상 미혼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2022년)]

(단위: %)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결혼자금(혼수 비용, 주거마련 등)이 부족해서	29.7	35.4	22.0
직업이 없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	11.0	13.4	7.7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6.6	4.7	9.1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	10.7	9.3	12.5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11.6	11.3	11.9
결혼하기에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	0.8	1.1	0.6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9.6	8.4	11.2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부담되어서	1.0	0.6	1.6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8.7	15.2	23.3

자료: 「사회조사」, 통계청(지표누리)

또한, 결혼정보회사가 최근 발표한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른 경우

신혼집을 제외한 결혼비용은 평균 5,765만원으로,⁸⁾ 2023년 근로소득자의 평균 총급여액인 4,332만원을⁹⁾ 상회하여 결혼비용 부담이 막중한 상황에, 일반적으로 혼수 준비에 활용되는 신용카드 등 결제 사용분에 대한 추가적인 한도 상향으로 그 부담을 일부 경감한다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종합소득공제 금액 상향을 통한 혼인을 제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 결혼정보 전문업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비용은 3억 6,173만원으로 2024년 대비 6,425만원 증가¹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정안에 따른 1인 기준 공제액의 인상분은 평균 결혼비용의 0.5%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혼인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둘째, 저출생 문제 해소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소 또한 목적으로 하고 있고 통상 혼인이 출생의 전단계로 인식되기는 하나, 혼인과 출산을 독립적인 사안으로 인식하는 청년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22년에는 과반(53.5%)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8) 2025년 결혼비용 보고서

9) 「소득세 표본자료」, 국세청, 2024.12.

10) 2025년 결혼비용 보고서, 2024년 결혼비용 보고서 등

[결혼 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중]

(단위: %)

구 분	2018년	2020년	2022년
전체	30.5	32.0	34.7
청년	46.4	50.5	53.5

자료: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통계청, 2023. 8. 28.

또한, 청년들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¹¹⁾, 고용·소득 불안정과 아울러 울로족, 덩크(DINK: Double Income No Kids)족의 확산 등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혼인 관련 공제 금액의 인상 및 적용기한의 연장으로는 최근의 비혼·저출생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힘든 상황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결혼을 망설임 이유 비중 연도별 추이]

(단위: 명)

사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결혼비용	46.4	65.8	53.2	51.4	41.9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12.5	9.1	8.6	13.9	12.6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 부족	18.8	9.2	16.4	12.9	25.2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13.7	9.1	11.8	12.3	18.2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7.5	6.3	8.5	9.5	1.2
기타	1.1	0.6	1.5	-	0.8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p.59

셋째, 개정안은 근로소득의 고저를 불문하고 혼인하는 연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으로 일괄 상향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 7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기본공제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혼인한 연도에 한정하여 소득을 불문하고 50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혼인 시점

11) 청년(15세~2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7년 46.7% → 2018년 47.1% → 2019년 47.8% → 2020년 46.4% → 2021년 47.9% → 2022년 49.8% → 2023년 49.4%로 나타나고 있음.(통계청, 각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에 더욱 높은 소비력을 지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세제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¹²⁾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에 대한 50만원의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2)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혼인관련 세액공제 금액 상향 및 기간 연장(전재수의원안, 송석준의원안)

현 행	전재수의원안 ¹³⁾	송석준의원안
☐ 결혼세액공제(제92조) ※'24년 세법개정 신설 ○ 공제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공제기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형태: 세액공제 ○ 공제금액: 50만원 ○ 적용기간: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분	☐ <u>결혼세액공제 금액 상향 (제95조)</u> ○ (현행과 같음) ○ 공제금액: 100만원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5.1.1.	☐ <u>결혼세액공제 금액 상향 및 적용기간 연장 (제92조)</u> ○ (현행과 같음) ○ 공제금액: 300만원 ○ 적용기간: 2027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분 ○ 시행일: 2026.1.1.

* 전재수의원안 2024. 11. 4. 제출(의안번호 5193), 송석준의원안 2025. 1. 3. 제출(의안번호 7217)

☐ 2건의 개정은 혼인관련 세액공제 금액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재수의원안은 혼인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를 신설하여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 세액공제를,

송석준의원안은 현행 혼인관련 세액공제금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13) 전재수의원안이 제출된 이후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가 신설되어 개정안은 입법 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그 금액을 상향하는 규정에 한정하여 검토함

분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통계청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처음으로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2023년 기준 19만 3,657건을 기록하였음.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 역시 혼인건수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6년 5.5건에서 2023년 3.8건으로 약 31% 감소하였음.

[연도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단위: 건, 천명당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혼인건수	281,635	264,455	257,622	239,159	213,502	192,507	191,690	193,657
조혼인율	5.5	5.2	5.0	4.7	4.2	3.8	3.7	3.8

주: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함.

자료: 「인구동향조사」, 통계청(국가통계포털 KOSIS)

이와 같은 혼인률의 하락은 저출생 추세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약 40만 6,000명에서 2023년 23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임.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천명, 가임여자 1명당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출생아 수	406	358	327	303	272	261	249	230
합계출산율	1.17	1.05	0.98	0.92	0.84	0.81	0.78	0.72

자료: 「인구동향조사」, 통계청(국가통계포털 KOSIS)

□ 이에 개정안은 혼인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금액을 상향하고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혼인과 출산 장려를 통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혼인비용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혼인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13세 이상 미혼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남녀 모두 결혼자금의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선택하였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혼인비용을 경감함으로써 혼인을 장려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3세 이상 미혼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2022년)]

(단위: %)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결혼자금(혼수 비용, 주거마련 등)이 부족해서	29.7	35.4	22.0
직업이 없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	11.0	13.4	7.7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6.6	4.7	9.1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	10.7	9.3	12.5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11.6	11.3	11.9
결혼하기에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	0.8	1.1	0.6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9.6	8.4	11.2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부담되어서	1.0	0.6	1.6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8.7	15.2	23.3

자료: 「사회조사」, 통계청(지표누리)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세액공제 금액 상향을 통한 혼인을 제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 결혼정보 전문업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비용은 3억 6,173만원으로 2024년 대비 6,425만원 증가¹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정안에 따른 1인 기준 공제액의 인상분은 평균 결혼비용의 0.125~0.625%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혼인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둘째, 저출생 문제 해소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소 또한 목적으로 하고 있고 통상 혼인이 출생의 전단계로 인식되기는 하나, 혼인과 출산을 독립적인 사안으로 인식하는 청년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22년에는 과반(53.5%)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결혼 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중]

(단위: %)

구 분	2018년	2020년	2022년
전체	30.5	32.0	34.7
청년	46.4	50.5	53.5

자료: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통계청, 2023. 8. 28.

또한, 청년들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¹⁵⁾, 고용·소득 불안정과 아

14) 2025년 결혼비용 보고서, 2024년 결혼비용 보고서 등

올리 올로족, 딩크(DINK: Double Income No Kids)족의 확산 등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혼인 관련 공제 금액의 인상 및 적용기한의 연장으로는 최근의 비혼·저출생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힘든 상황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결혼을 망설임 이유 비중 연도별 추이]

(단위: 명)

사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결혼비용	46.4	65.8	53.2	51.4	41.9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12.5	9.1	8.6	13.9	12.6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 부족	18.8	9.2	16.4	12.9	25.2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13.7	9.1	11.8	12.3	18.2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7.5	6.3	8.5	9.5	1.2
기타	1.1	0.6	1.5	-	0.8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p.59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혼인공제 금액을 상향 및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2026년에는 1,652억원 2026~2028년 5년간 연평균 1,652억원(전재수의원안), 2026년에는 3,550억원 2026~2028년 3년간 연평균 3,826억원(송석준의원안)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또한, 혼인관련 세액공제는 2024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므로, 동 제도의 시행 이후 운영성과에 대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8

15) 청년(15세~2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7년 46.7% → 2018년 47.1% → 2019년 47.8% → 2020년 46.4% → 2021년 47.9% → 2022년 49.8% → 2023년 49.4%로 나타나고 있음.(통계청, 각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